의안번호	2209265
의 뢰 인	정동만의원
회 답 일	2025.4.15.
추계번호	25D1673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제1항(구조금액)	유족급여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곱하는 개월 수의 상한을 48개월에서 96개월로 상향 규정	
2	안 제22조제2항(구조금액)	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 산정에서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곱하는 개월 수의 상한을 48개월에서 60개월로 상향 규정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2조제1항(구조금액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2조제2항(구조금액)	

2. 상세 사유

❑ 유족급여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곱하는 개월 수의 상한을 48개월에서 96개월로 상향 규정(안 제22조제1항)

○ 현행법은 유족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월 수를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– 「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」 제22조는 현행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에 대해서는 48개월, 현행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에 대해서는 38개월, 현행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에 대해서는 28개월을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[1)]

○ 개정안에 따라 유족급여 산정 시 곱하는 개월 수의 상한이 48개월에서 96개월로 상향 규정될 경우 「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」에 규정된 개월 수가 상향 조정되고 유족급여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개월 수의 상향 조정에 따른 급여 지급액 증가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❑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 산정에서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곱하는 개월 수의 상한을 48개월에서 60개월로 상향 규정

○ 현행법은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월 수를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– 「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」 제23조는 장해등급별 개월 수를 장해등급별(1~14급)로 3개월에서 48개월로 규정하고 있음

---

1)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8조(유족의 범위 및 순위) ① 유족구조금이나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(이하 "유족구조금등"이라 한다)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1.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
2.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, 손자·손녀, 조부모 및 형제자매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피해자의 자녀, 부모, 손자·손녀, 조부모 및 형제자매

○ 개정안에 따라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 산정 개월 수의 상한이 48개월에서 60개월로 상향될 경우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개월 수의 상향 조정에 따른 급여 지급액 증가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❑ 참고로 2021~2024년 연도별 유족급여 및 장해·중상해구조금 지급에 편성된 예산은 다음과 같으며, 개정안에 따라 개월 수가 상향 조정될 경우 유족급여는 100%, 장해·중상해구조금은 25%가량 증가된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

○ 지급액 대부분이 유족구조금이므로 전체 지급액이 2배 가량 증가될 것으로 보임

[표 1] 연도별 유족구조금 및 장해·중상해구조금 지급액: 2021~2024년

단위: 백만원

구분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
유족구조금 및 장해·중상해구조금 지급액	9,792	9,503	8,990	7,910	9,049
유족구조금 지급건수	144	138	111	100	123
장해·중상해구조금 지급건수	47	51	38	46	46

자료: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